

별정통신사업관련 기본정책

류 필 계 정보통신부 과장

별정통신사업 도입 배경

- '97. 2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을 이행하고 기술발전등 정보통신사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
 - 음성재판매, 인터넷폰, 콜백서비스 등 틈새형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하여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에 영향

별정통신사업 영역과 전망

음성재판매

- 음성재판매의 유형
 - 공전공접속에 의한 음성재판매(Switched Reseller)
 - 최소 한 단층에 교환기를 보유하고, 전송설비는 임차
 - 공중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며, 과금체계를 보유
 -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고, 공중망사업자의 대량이용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음성서비스를

단순재판매(Switchless Reseller)

- 재과금사업자(Rebiller) : 공중망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재과금하는 사업자로서, 과금체계를 보유하며 접속료는 지불하지 않음
- 호집중사업자(Aggregator) : 다수의 지역에 산재한 고객들을 할인요금 대상의 단일고객으로 묶음으로써 사업을 하며,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 과금체계도 보유하지 않음

- 무선통신서비스 재판매

- 셀룰러, PCS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(기지국, 교환국, 기간망 등)를 보유하지 않고, 설비보유 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(Airtime)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○ 재판매시장 규모

- '98년 1,660억원에서 2001년에는 2,836억원으로 전망
- 전체 시외전화의 6%, '99년 이후 국제전화의 3% 점유 예상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'98 | '99 | 2000 | 2001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시 외 | 1,660 | 1,835 | 2,006 | 2,171 |
| 국 제 | - | 482 | 554 | 665 |
| 합 계 | 1,660 | 2,317 | 2,561 | 2,836 |

* 자 료 : 통신개발연구원

○ 기대효과

- 틈새수요 충족으로 국민의 통신편익 증진, 시 외 · 국제전화 시장의 경쟁 활성화, 교환설비 등 수요확대,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사업자의 재판매시장 선점 효과

인터넷폰

○ 인터넷폰의 유형

- 인터넷폰은 공 · 전(인터넷망) · 공 접속에 의한 서비스로 초기에는 PC-to-PC 형태로 부가통신서비스였으나, 기술발전으로 PC-to-Phone, Phone-to-Phone 형태의 음성전화 서비스도 가능

※ PC-to-Phone 방식 과, Phone-to-Phone 방식은 공중전화망과 접속되는 쪽에서 게이트웨이(Gateway) 설치 필요

○ 시장규모

- '98년 182억원에서 2001년 2,098억원으로 성장 전망
- 저렴한 요금을 기반으로 2001년에는 국제전화 및 시외전화 시장의 약 4%를 점유할 것임

< 국내시장전망 >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| '98 | '99 | 2000 | 2001 |
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시 외 | 122 | 304 | 728 | 1,346 |
| 국 제 | 60 | 160 | 400 | 752 |
| 합 계 | 182 | 464 | 1,128 | 2,098 |

콜백서비스

- 국가간 국제전화요금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, 불완료호신호방식(Uncompleted Call Signaling)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
- 시장규모
 - '99년 531억원으로 전체 국제전화의 3%를 차지하나 인터넷폰 및 재판매가 활성화되면 점차 감소하여 2001년 430억원 전망

< 국내시장전망 >

(단위 : 억원)

| 연 도 | '99 | 2000 | 2001 |
|-----|-----|------|------|
| 매출액 | 531 | 478 | 430 |

○ 기대효과

- 국제전화요금 수준이 높은 나라를 대상으로 한 우리 통신사업자의 해외수익 창출 및 관련 기술 습득 가능

구내통신

- 일정한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
 - 구내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나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유인이 없는 것이 문제
- 시장규모
 - 국내의 구내통신장비 시장은 '96년 3,621억원 규모로 연평균 75%이상 고성장 지속

< 국내 구내통신장비 시장규모 >

(단위 : 억원)

| '92 | '93 | '94 | '95 | '96 | '97 (추정치) | 연평균 성장률 |
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330 | 800 | 1,520 | 2,174 | 3,621 | 5,423 | 75% |

별정통신사업관련 기본정책 방향

-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'97. 8. 28 공포) 내용

현 행

○ 설비 및 역무를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

| 구 분 | 설비유무 | 제공역무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간통신사업자 | 설비보유 | 기간통신역무 |
| 부가통신사업자 | 설비임차 | 기간통신역무이외의 전기통신역무(부가통신역무) |

○ 현행법의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진입 금지

-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: 음성재판매, 인터넷폰 등
- 설비를 임차하지 않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: 국제콜백
- 구내에 전기통신설비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 : 구내통신

개정내용

○ 현행법상 진입금지된 음성재판매, 인터넷폰 등 통신사업의 진입금지를 철폐하고 일정요건만 갖추어서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정통신사업 신설

- 전기통신사업구분 : 기간통신사업, 부가통신사업, 별정통신사업

○ 별정통신사업의 정의(제4조제3항 : 신설)

-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

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

- 별정통신사업의 분류

- 음성재판매(서비스재판매 및 무선재판매 포함), 인터넷폰, 국제콜백, 구내통신사업 등

○ 진입요건(제19조 : 신설)

- 별정통신사업은 등록으로 하되 초기에 통신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적 능력, 이용자보호 등 일정 등록요건을 부과

○ 사업시기 : '98. 1. 1부터 허용(부칙 제1조)

○ 지분제한

-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 지분제한은 적용치 않음

별정통신사업관련 향후 정책방향

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설정 방향

- 통신사업 진입제도로서 등록은 사업계획서등을 평가하는 허가와 달리 사전설정된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진입의 자율성을 높인 제도임
- 엄격한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기존의 통신시장 구도 및 체계가 유지되는 장점은 있으나 진입 희망자중 소수의 참여만 가능하여 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
- 완화된 등록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다수 사업자의 참여로 등록제 도입취지에 부합되나 사업자의 지나친 난립으로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야기 가능성이 많음
- 따라서 등록요건은 등록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용자에게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

재판매의 분류

- 분류의 필요성
 - 재판매사업은 사업형태 및 이용기술이 다양하므로 이를 반영한 등록요건의 설정이 필요
- 재판매사업의 분류 방안
 - 당초 재판매사업을 구체적 사업형태에 따라 음성재판매, 인터넷폰, 국제콜백, 호집중 및 재과금사업자등으로 세분하는 방안과
 - 재판매사업을 각 사업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전기통신설비 보유사업자와 미보유사업자로 대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
 - 향후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사업형태등장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설비보유여부에 따른 구분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
- 재판매사업의 구체적 분류
 - 설비보유 사업자
 - 재판매사업중 교환설비등 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·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음성재판매, 인터넷폰, 국제콜백 등이 해당됨
 - 설비미보유 사업자
 - 재판매사업중 설비보유사업을 제외한 사업자로 호집중사업자, 재과금사업자, 무선재판매 등이 해당됨.

구체적 등록요건

- 재정적 능력
 - 별정통신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 충족

| 구 분 | 등 록 기 준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1호의 사업(설비보유재판매) | 자본금 30억원 이상 |
| 제2호의 사업(설비미보유재판매) | 자본금 3억원 이상 |
| 제3호의 사업(구내통신사업) | 자본금 5억원 이상 |

- 기술적 능력
 - 기술방식
 - 전기통신설비 및 역무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
 - 기술인력

| 구 분 | 등 록 기 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1호의 사업 (설비보유재판매) |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계 자격자 3인, 기능계 자격자 2인이상 |
| 제2호의 사업 (설비미보유재판매) |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계 자격자 1인이상 |
| 제3호의 사업 (구내통신사업) |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계 자격자 1인, 기능계 자격자 1인이상 |

- 이용자 보호계획
 - 1인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 설치
 - 이용자보호관련 이용약관의 제정
 -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
 - 역무제공 불가능시 보상조치 및 대책 명시
 -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보호대책 준수

향후 추진방향

- 입법예고 결과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'97.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공포하여 '98. 1. 1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
- '98. 1. 1일부터 별정통신사업이 시작될 경우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로 관련사업이 발전하고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